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32
Fax : +82-70-8799-8319
E-mail : wskwon@krs.co.kr
Person in charge :
KWON Wooseok

No : 2024-IMO-12
Date : 28 November 2024

제목 : IMO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베이스(IMO DCS)의 향상된 세분화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적용 지침 안내 (Rev.1)

이 기술정보는 IMO DCS의 운송작업량 및 향상된 세분화를 적용한 데이터 포함에 관한 MARPOL 부속서 VI 부록 IX 개정사항(결의서 MEPC.385(81))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배경

MARPOL 부속서 VI 제27규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Part II에 포함된 방법론에 따라 부록 IX에서 요구하는 연간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매년 종료시점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위임한 검증기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차(24.03)는 수집된 데이터의 향후 규제 개발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세분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부록 IX의 개정사항을 결의서 MEPC.385(81)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SEEMP 개발 지침서(결의서 MEPC.395(82)로 개정된 MEPC.388(81))와 주관청 검증 지침서(결의서 MEPC.389(81))를 개정하였으며, MEPC 82는 적용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 지침(MEPC.1/Circ.913)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약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며, 선사 및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관련 요건, 적용 시기 및 조치사항을 제공하고자 기술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세분화 적용에 따른 수집 항목(부록 IX)의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유종별 총 연료유 소모량	(좌동)
(추가)	소비자 형식(consumer type)별, 유종별 총 연료유 소모량: 주기관, 발전기, 보일러, 기타 기기
이동 거리	(좌동)
(추가)	적재 이동 거리(자발적 수집)
운항 시간	(좌동)
(추가)	공급된 총 육상 전력량
MARPOL 부속서 VI 제28규칙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적용사항:	
(추가)	총 운송 업무량
적용되는 CII 지표: AER, cgDIST 연간 운항적 CII 허용값 연간 운항적 CII 계산값(보정 전/후)	(좌동)
(추가)	혁신적인 기술의 설치(해당 시): A, B-1, B-2, C-1, C-2 (MEPC.1/Circ.896 참조)
운항적 탄소집약도 등급: A, B, C, D, E 시범 목적의 CII(자발적): EEPI, cbDIST, cDIST, EEOI	(좌동)

2. 적용 시기

- (1) MEPC 81에서 채택된 결의서 MEPC.385(81)에 따라 동 협약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아울러, 당사국들이 2025년 1월 1일부터 조기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MEPC 82에서는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의 적용 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였고, 논의 결과 <조기 이행> 적용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역년(calendar year)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MEPC.1/Circ.913).
 - 조기 이행 적용: 2025.1.1부터 데이터 수집 시작
 - 조기 이행 미 적용: 2026.1.1부터 데이터 수집 시작
- (3) 조기 이행의 적용 여부는 기국 지침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식별된 기국별 조기이행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국 주관청	조기 이행 (25.1.1) 적용 여부
Argentina	강제 적용
Bahamas	<u>권고(자발적 적용)</u>
Denmark	강제 적용
Liberia	권고(자발적 적용)
Marshall Islands	권고(자발적 적용)
Panama	권고(자발적 적용)
St. Kitts and Nevis	<u>권고(자발적 적용)</u>

3. 조치 사항

- (1) 상기 기국 지침에 따른 <강제 적용> 대상 선박 및 그 외 자발적으로 <조기 이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조기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본선에서 이를 이행하기 전에 SEEMP 개발 지침서(결의서 MEPC.395(82)로 개정된 MEPC.388(81))의 개정된 방법론을 선박의 SEEMP Part II에 반영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승인 및 적합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3) SEEMP Part II의 개정 및 승인에 관한 상세 문의는 우리 선급 친환경기술팀 (krgst@krs.c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 MARPOL 부속서 VI 개정사항(결의서 MEPC.385(81))
2. SEEMP 개발 지침서 개정사항(결의서 MEPC.395(82)로 개정된 MEPC.388(81))
3. 주관청 검증 지침서 개정사항(결의서 MEPC.389(81))
4. 동 개정사항의 적용 지침(MEPC.1/Circ.913)

배부처 : 검사원, 선주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KR surveyors, Ship owne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